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환경부 (교통환경과)
연 월 일	2022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개정이유

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조기 폐차 지원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고자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른 조기폐차 권고 대상 경유차를 확대(안 제79조제1항제1호)

조기폐차 권고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중 경유자동차의 범위를 현행 별표17제2호 “마~아목”(2006년 1월 1일 이후 기준이 적용된 경유자동차)으로 규정하던 것을 “바~아목”(2009년 9월 1일 이후 기준이 적용된 경유자동차)으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조기폐차 지원에 차량 1대당 평균 예산 약 2백만원 소요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환경부령 제 호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9조제1항제1호 중 “제2호마목”을 “제2호바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9조(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)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”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.	제79조(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자동차: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별표 17 제1호마목부터 아목까지 및 <u>제2호마목</u> 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	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2호바목</u> ----- ----- ----- 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